

■ 법률 칼럼

##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requirement)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 여론이 비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

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 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증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 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장례보험 및 화장 시 유골 처리

**■ 장례보험**  
 장례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미국에는 장례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여럿 있다. 이런 보험회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믿을 수 있다.  
 장례보험의 장점은 참으로 많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지금 장의사와 계약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장례를 치를 때 인상된 가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미리 장례보험을 들어 두면 유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장례를 잘 마칠 수 있기에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다.  
 자녀들에게 교육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본인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 예식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무언 중에 가르치는 큰 교육이다.

장례보험은 계약 할 때 한 장의사를 선정하여 그 장의사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하지만 언제든지 장의사는 바꿀 수가 있다. 보험 가입자가 이사를 하였다든지, 아니면 장의사의 가격과 서비스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장의사로 옮길 수 있다.  
 또 20년 전에 매장으로 장례보험을 준비하고 완납하였는데 마음을 바꾸어 간소한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 A 라는 큰 장례업체의 장례보험을 구입하였지만 B라는 장의사에서 같은 장례를 저렴하게 해준다면 B 장의사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1. 묘지에 매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모신다
2. 큰 공원묘지에 유골들을 공동으로 한 곳에 뿌리는 지정된 장소가 있다. 벽에 이름만 세긴다.
3. 바다에 뿌리려면 사망증명서 작성 시 어느 카운티 해변에 유골을 뿌릴 것이라고 작성하고 유골을 받으면 등록된 배를 선정하여 적어도 3해리 밖으로 나가 유골을 뿌릴 수 있다. 유골함이 4시간 내에 녹아 없어지는 수용성 유골함을 사용하면 뿌리지 않고 유골함을 그대로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나갈 수도 있다
4.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뿌릴 수도 있다. 허가증을 받은 비행기와 비행사를 찾아야 한다.
5. 국립공원 혹은 국립공원에는 조용히 흩어 뿌릴 수 있다. 망자의 즐겨 찾던 공원 등에서 허가를 받아 합당한 절차에 따라 뿌리는 것이 좋으나 유골은 유해한 물질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조용히 뿌려도 무방하다.

사진=shutterstock

**■ 화장 시 유골 처리 방법**  
 화장이 증가하며 유골 처리에 관해 질문을 해 오는 분들이 많다. 다음은 화장 시 유골 처리 방법이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9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권장)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Brookhurst St	Lampson Ave	Euclid
<b>Yoon Chiropractic</b>		
Garden Grove St		
22 Fwy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